

중소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초읽기’

중기중앙회, 로펌과 TF 꾸려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 판단
내달 26일까지 심판청구 해야

김기문 회장
“중소 가능성 없으면 청구 안 할 것
사용자 너무 과도 처벌 받으면 안돼”

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염원했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을 놓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국내 ‘TOP 3’ 로펌 중 한 곳과 교감을 갖고 2월 말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3번째) 등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해당 로펌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원사무장을 역임한 거물급 인물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등 관련 준비를 위해 1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현재 대응팀, 국회대응팀을 꾸려 놓은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을 놓고 위헌성 검토에 들어간 결과 충분히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2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중소 가능성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사용자(사장)가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법률가들 역시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적용 중처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만큼 90일 이내인 오는 4월 26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 전체에 대한 ‘무산’ 시도는 아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소원 청구에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본회 구성원이 50명을 훨씬 넘어 이번 헌법소원에는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징적 측면과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부담 차원에서 측면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

구에는 50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단체를 최대한 규합하되, 산업 분야도 전체를 아우르는 등 몸집을 최대한 부풀려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한 집회에 이어 향후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여론에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부 강경노조는 지하 철도 세우고, 국가기간산업도 멈추게 하는데 중소기업계는 관련 집회를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집회 문화를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정체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기술침해 손해 산정액 90% 지원

중기부, 소송준비 기업 등 대상 확대
소송 대리 변호사 신청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대

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기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보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자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은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

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율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4일부터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지난달 28일 'SPC GFS 인천물류센터'에서 안전기원제를 한 후 (첫줄 왼쪽 2번째부터)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한진 관계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SPC GFS 인천물류센터’ 본격가동

100억 투입, 상온·냉동 창고 갖춰

(주)한진의 신선 물류 인프라와 SPC의 운영 노하우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됐다.

물류회사들의 물류센터가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유통에 발맞춰 고객맞춤형으로 탈바꿈하면서다.

3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천 중구 율미로 ‘SPC GFS 인천물류센터’에서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건립한 센터는 총 약 3만 2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약 5200㎡ 규모로 상온과 냉장 및 냉동 창고 시설을 다양하게 갖췄다.

이로써 향후 파리기게트와 파리크라상 제품의 보관과 분류 등 신선식품 물류센터 기능과 함께 서울 서부권과 인천 및 경기북부 등 약 550개 점포에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 거점을 광범위하게 구현하게 됐다.

SPC GFS 인천물류센터는 정장을 맞추듯이 고객사의 개별 니즈를 꼼꼼하

게 반영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창고 부지를 비롯해 규모와 레이아웃, 가동 조건을 고려한 투입 설비와 운용까지 ‘BTS(Build-To-Suit)’ 방식으로 고객사와 함께 기획해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 안전을 위한 철골조 무지주 공법(PEB 공법)을 채용한 것을 비롯해 선도가 생명인 제빵류 중심의 상품들이 신선한 상태로 점포에 배송될 수 있도록 한 항온항습장치, 밝은 작업환경을 위한 150룩스 이상의 조명 등을 갖추었다.

간선 차량 접안을 위한 차량 규격별 도크(Dock) 설계, 은돌 휴게 공간 등 세부사항까지 SPC와 함께 꼼꼼히 협의해 구현했다. 이같은 고객맞춤형 센터는 2013년 경남 양산 ‘SPC 물류창고’와 2021년 ‘배스킨라빈스 물류창고’ 개설에 이어 세 번째다.

한진은 고객사와의 윈·윈 관점에서 기업고객 수요 환경에 따라 물류 창고 리엔지니어링, 맞춤형 물류창고 운영대행 등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승호 기자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환급

중기부, 2023년 이전 개업자 대상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해당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연

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12개월)으로 계산한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었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소진공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기를 도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한 폐업공제금 수령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취업·재창업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해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줄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